



3. 의료법규

• 단원별 요약정리

[보건의료기본법]

1. 목적(법 제1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법 제2조)

보건医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법 제3조)

- 1)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3)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 4)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6)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법 제4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보건의료인의 책임(법 제5조)

- 1)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3)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법 제6조)

-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항목으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 있다.

7. 건강권(법 제10조)

- 1) 모든 국민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8. 알 권리(법 제11조)

- 1)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9. 자기결정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10. 비밀보장(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1.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법 제14조)

- 1)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 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12.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법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6) 중앙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 7)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8)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 9) 기타 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법 제17조)

시,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법 제20조)

- 1)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외).

※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5. 보건의료자원의 관리(법 제24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 하여야 한다.

16. 보건의료인력의 양성(법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보건의료인 사이의 협력(법 제26조)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분담(법 제27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3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9.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법 제28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법 제29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1. 응급의료체계(법 제3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 평생 국민건강관리사업(법 제3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3.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법 제46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보건의료사업의 평가(법 제5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요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보건의료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법 제5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6.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법 제 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7.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법 제5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법 제58조의3)

- 1)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환자의 권리와 안전
- ②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④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⑤ 환자 만족도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5)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 6)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7)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구분	의료법(의료인)
목적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종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5종)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6종) ※의료기사 등: 의무기록사, 안경사
유사종별	<유사의료업자: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9개) *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	◆ 300병상 이상: 1) 내과 2) 외과 3) 소아청소년과 4) 산부인과 5) 영상의학과 6) 마취통증의학과 7) 진단검사의학/병리과 8) 치과 9) 정신건강의학과(9개) ◇ 300병상 이하: 1)~4) 중 3개, 5) 영상의학과 6) 마취통증의학과 7) 진단검사의학/병리과(7개)
결격사유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현재, 구속기소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이라도 상관없다.
국가시험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회 이상, 시험일시 30일전까지 공고
시험방법	총점 60% 이상, 매과목 40% 이상 득점 시 합격자
권리	의료기술보호, 의료기재 압류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의무	진료거부, 처방전교부, 정보누설금지, 태아성감별금지, 기록열람,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신고	취업실태보고(보건복지부장관)
진료기록 보존	2년(처방전), 3년(진단서: 일반, 사망, 검안), 5년(검사소견서, 방사선사진 / 소견서, 간호기록, 조산기록),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변사체신고	관할경찰서장(위반사: 300만원 이하 벌금)
단체	중앙회 당연설립(법적 공법인)
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	의대기초의학을 연구, 군복무, 전공의, 대학원재학,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진료안함), 해외체류, 휴·폐업 6월 이상,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
정보누설금지	친고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의료법(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 •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신고·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시·군·구청장 - 신고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시·도지사 - 허가
의료기관 휴·폐업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 및 게시 ◇ 고지·게시한 금액 초과 징수 불가
의료광고	의료인(성명, 성별, 면허종류) / 전문과목·진료과목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일·진료시간 / 응급진료운영 / 예약진료 / 주차장
면허취소	의료인의 결격사유,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의 조건을 불이행, 태아의 성감별 행위,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1)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3)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검안서 허위 작성, 4) 무면허의료행위, 5)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 6) 진료비 부당청구, 7) 과대 의료광고, 8) 명령을 위반할 때(1년 이하)
품위손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당직의료인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수(의원 필요 없음)
전문간호사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면허증회수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준 자 2)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 3)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자 → ※ 3)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4)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한 자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한 자

구분	의료법(의료인)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8)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9)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10) 의료기관 개설 가능자 외의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1)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2개 이상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한 경우는 제외) 12)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법인 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 타인의 정보를 누설·발표한 자(친고죄), 2)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에 응한 경우(친고죄), 3)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한때 4)무면허의료행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을 개설한 자, 6)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 한 자 7)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자 8)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특수 의료장비 사용시 9) 개설자 이외의 자가 병원 부설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관할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설 할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중인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때, 11)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의료인·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 (친고죄), 12)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자격인정 받지 아니한 자가 안마행위를 할 때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	1) 태아 성(sex)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검사하거나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 2)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자가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준 경우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 5)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한 경우 6)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잡지·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7)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구분	의료법(의료인)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8)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1)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닌 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3)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변경 신고사항도 같다) 6)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7)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1)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비급여진료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1) 세탁물업자 교육 기록 및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개설장소 이전, 개설신고·허가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시 신고, 허가받지 아니한 자, 3) 의료업 휴·폐업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개설자, 4)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의료기관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6) 진료과목 표시 위반자 7)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의료인의 신분증 패용을 위반한 자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1)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2)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함.	
감염병	1군(집단발생)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6종>
	2군(예방접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 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12종>
	3군(간헐적)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쯤쯤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梅毒),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4군(신종, 해외 유행 감염병)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5군(기생충감염)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 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p>1) 세균 및 진균(폐스트균, 탄저균, 브루셀라균, 비저균, 멜리오이도시스균, 보툴리눔균, 이질균, 클라미디아 프시타키, 큐열균, 아토균, 발진티푸스균, 홍반열 리케치아균, 콕시디오이데스균, 콜레라균)</p> <p>2) 바이러스 및 프리온(헤르페스 B 바이러스,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헨드라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원숭이폭스 바이러스, 니파 바이러스, 리프트 벨리얼 바이러스,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황열 바이러스,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 소두창 바이러스,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감염병	<p>예방 및 방역대책, 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 및 홍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조사·연구, 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약제내성 감시)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관리사업의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p>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p>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임명),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 (필요시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음)</p>
의료인 등의 책무	<p>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p>
국민의 권리와 의무	<p>1)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3)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p>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기본 수립 보건복지부장관-5년	<p>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p>
감염병관리위원회 (임기 2년)	<p>기본계획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해부명령, 예방접종의 실시간준과 방법,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위원회 구성 (필요사항-대통령령)	<p>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전문위원회의 구성 (분야별-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p>1) 예방접종, 2) 예방접종피해보상, 3) 후천성면역결핍증, 4) 결핵, 5) 역학조사, 6) 인수(人獸)공통감염,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8) 감염병 연구기획</p>

구 분	신고사항	신고자(의무자)	기간	방법	관리자 (신고받는 자)
① 감염병환자들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소속)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소속 의료기관장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					
③ 감염병환자들이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	감염병 발생 신고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 비소속)		"	보건소장
감염병 1, 2, 3, 4군	감염병 발생 신고서	소속 의료기관장	지체 없이	"	보건소장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감염병 발생 신고서	소속 의료기관장	7일	"	보건소장
감염병 1, 2, 3, 4군 +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감염병 발생 신고서	군의원(보고) → 소속부대장(신고)	지체 없이	"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 감염병 3) 5군감염병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		"	보건소장
감염병 발생 보고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	제1군~제4군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건소장	지체 없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제5군, 지정감염병		매주 1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	1) 세대주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보건소장

구 분	신고사항	신고자(의무자)	기간	방법	관리자 (신고받는 자)
		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기타 신고대상 감염병 (홍역, 결핵)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	보건소장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 1) 바이러스]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者) 발생신고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보관	보건소장
감염병 표본감시(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5군감염병)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1)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 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 는 의료기관, 2) 보건의료원, 3) 의료 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4) 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5) 보건환경연구원, 6) 보건소, 7) 제 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 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 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 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1) 직업에 종사하는 자 2) 성매개감염병에 감염 되어 그 전염을 매개 할 상당한 우려가 있 는자	시장·군수·구 청장
정기예방접종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 성이하 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임시예방접종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 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예방접종 공고	일시, 장소, 종류, 범위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예방접종 접종증명서	정기 또는 임시예방 접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예방접종 기록 보존, 보고	* 예방접종 실시대장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 된 사항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
예방접종피해조사 반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 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 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를 조사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질병관리본부장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예방접종피해 조사반의 구성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인	10명 이내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	보육시설의 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예방접종약품 계획생산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 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전액 지급)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전액 지급)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금액의 2분의 1)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입원치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1)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감염병환자 입원 통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1) 건강진단, 2) 감염병 예방접종 -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조치(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 등), 2)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오염장소 소독 조치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 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 대의 장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
감염병의 예방 조치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 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 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학교, 10)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소독업의 신고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독업의 휴업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소독실시대장 - 2년보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독업자 교육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 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소독업자 -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1)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소독업자 -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질병, 장애, 사망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장애인 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 부모 / 손자 / 조부모 / 형제자매	대통령령
예방접종피해 조사반의 구성 등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		질병관리본부장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1)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타인비밀누설		

구 분	내용(기능)	대상자	명령권자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1) 역학조사 행위를 위반한 자 2)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방역관의 조치를 위반한 자 5) 받은 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고, 업무 종료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요청을 거부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1)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건강진단 제외) 조치 및 1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위반한 자 6)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벌금	1)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2조 제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6)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7)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9)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시, 군, 구청장이 부과 / 징수)	1)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제2조)

-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등의 감염병을 말한다.
-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의(제2조)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 1)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2) 의류 :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 3) 리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 4) 기타 : 커튼,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3. 세탁금지 세탁물(제5조)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 3)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4. 시설 기준(제6조)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

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감염 예방 교육(제8조)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6. 지도 및 보고(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단원별 문제정리

• 3. 의료법규



1.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만을 위해서
- ②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위해서
- ③ 보건의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위해서
- ④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음 [] 옳은 것은?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을(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을(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① 수준, 건강한 삶, 양
- ② 가치, 건강한 삶, 질
- ③ 수준, 보편적인 삶, 양
- ④ 가치, 불건강한 삶, 질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개념(제2조)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 ① 약국 ② 요양원 ③ 보건기관 ④ 의료기관

7.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하는 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진료 받을 권리 ②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③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④ 병원을 선택할 권리

해설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 할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 등 의료관련 법률에서 정한 권리·의무 항목으로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이다

8.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닌 것은?

- ①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
②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
③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④ 일부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의 책임이 아닌 것은?

-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③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
④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 ①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 ①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 가진다.” 위 문장에서 ()에 적합한 용어는?

- ① 필요한, 권리 ② 필요한, 의무 ③ 적절한, 권리 ④ 적절한, 의무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제6조)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모든 국민은 (), 나이, (),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 문장에서 ()에 적합한 용어는?

- ① 성별, 종교 ② 종교, 학력 ③ 학력, 직업 ④ 직업, 지역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권(제10조)
 1) 모든 국민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3.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③ 배우자의 사촌형제 ④ 배우자의 직계비속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11조)
 1)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기타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9.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 ① 건강권 ② 비밀보장 ③ 국민의 의무 ④ 자기결정권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제14조)

- 1)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누구든지 건강에 위대한 정보를 유보 광고하거나 건강에 위대한 기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20.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가.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나.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다.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라.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 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6) 중앙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 7)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 8)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 9) 기타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1.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주기는?

- ① 3년 ② 4년 ③ 5년 ④ 10년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는?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5조

2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옳은 것은?

- 가. 위원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제20조-제21조)

- 1)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의료발전계획 ②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③ 건강보험수가의 계약과 조정 ④ 주요 보건의료 정책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은?

- ① 보건의료자원관리 ② 보건의료인력양성
 ③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④ 보건의료제공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자원의 관리(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 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이 적정화되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 하여야 한다.

26.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이 아닌 것은?

- ① 인력 ② 정책 ③ 지식 ④ 기술

27. 보건의료인이 수행하여야 할 보건의료자원관리 등의 활동은?

- ① 보건의료인간 협력을 위한 노력
- ② 보건의료인력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 ③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필요 시책 강구
- ④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강구

28.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 ②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 ③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
- ④ 보건의료에 관한 기술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29.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 ① 보건의료자원관리
- ② 보건의료인간 협력
- ③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 ④ 보건의료인력양성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 사이의 협력(제26조)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④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 ① 보건의료자원관리
- ② 보건의료인력양성
- ③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
- ④ 보건의료제공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제2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지식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 ① 국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④ 사업주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6조(산업 보건의료)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① 보건소장 ② 시·군·구청장 ③ 시·도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② 정신보건의료
③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④ 구강보건의료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통계·정보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거나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 보건의료실태 조사 ②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③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정보서비스 제공 ④ 보건의료정보화의 표준화 추진

해설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의료법

36.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②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③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규정 ④ 의료의 적정을 기함

37. 의료법 제정의 목적은?

- 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증진함
 다. 보건의료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
 라.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

- ① 가, 나, 다 ② 가, 라 ③ 가, 나 ④ 가, 나, 다, 라

해설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8.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과의사 ② 한의사 ③ 의무기록사 ④ 조산사

해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약사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력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과는 다르다.

39.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 ① 조산사 ② 치과의사 ③ 약사 ④ 간호사

40.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②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전문의
 ③ 병원에서 수련 중인 레지던트
 ④ 병원에서 실습 중인 학생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 조기관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41.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하는 자는?

- | | | | |
|-------|--------|----------|--------|
| 가. 의사 | 나. 조산사 | 다. 간호조무사 | 라. 전문의 |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해설

의료법 제77조(전문요)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0조(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42.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상자의 진료보조 ② 해산부 간호 ③ 산욕부 양호지도 ④ 상병자 간호

해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시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43.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진료원 ② 농촌지도원 ③ 가족계획활동 ④ 모자보건요원

해설

의료법시행령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 농어촌등 보건의료취약지역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44.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원급 의료기관 ② 조산원 ③ 보건소 ④ 병원급 의료기관

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45.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된 의료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② 종합병원 ③ 상급종합병원 ④ 의원

46.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은 의료인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의료기관은 의원급, 병원급으로만 구분
 ③ 종합병원 중에서 증증질환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④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해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47. 의료법에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개설되는 진료과목 중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

- ① 안과 ② 소아과 ③ 정신건강의학과 ④ 산부인과

48. 의료기관 중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지정진료과목이 최소한 몇 과목 이상이어야 하나?

- ① 3과목 ② 5과목 ③ 8과목 ④ 7과목

해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1986.5.10, 1994.1.7>
-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 3. 30>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었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49.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과목은?

- ① 정신건강의학과 ② 영상의학과 ③ 피부과 ④ 치과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었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정답 45. ④ 46. ② 47. ① 48. ④ 49. ③

50. 의료법에 의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과목은?

- ① 내과 ② 병리과 ③ 영상의학과 ④ 마취통증의학과

해설

[의료법]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51.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꼭 설치되지 않아도 될 전문진료과목은?

- ① 영상의학과 ② 치과 ③ 마취통증의학과 ④ 내과

해설

종합병원 기준완화(2002년 3월 30일) 300병상 이하에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는 제외하며,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에서 3개 진료과목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와 해부병리과, 영상의학과를 포함하여 7개 이상 진료과목으로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52. 병원을 개설할 때 행정절차는?

- 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②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④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다.

해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53. 병원이 갖추어야 할 법적 병상 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20병상 ② 30병상 이상 ③ 100병상 ④ 100병상 이상

해설

의료법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54. 다음 ()에 알맞은 항목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내·외과를 포함한 총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30명, 3개 ② 100명, 7개 ③ 100명, 9개 ④ 300명, 9개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30]

55.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 병원에 추가되는 진료과목은?

- ① 내과 ② 정신건강의학과 ③ 소아청소년과 ④ 피부과

56.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② 입원실은 남·여 별로 구별할 것
- ③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④ 입원실이 아닌 장소라 하더라도 응급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 등은 입원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57.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 ① 한의원 ② 치과의원 ③ 조산원 ④ 약국

해설

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 제3조)은 종합병원, 병원(치과, 요양, 병원), 의원(치과), 한의원, 조산원의 9종이다.

58.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조산사 - 조산원
- ②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③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④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59.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 ① 조산원 ② 보건소 ③ 한의원 ④ 의원

60.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이 아닌 것은?

- ① 한방병원 ② 종합병원 ③ 종합클리닉센터 ④ 치과병원

해설

의료기관의 명칭(의료법 제3조)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9종이다.

61. 종합병원의 최소한의 진료과목 중 해당되지 않는 진료과는?

- ① 신경과 ② 일반외과 ③ 소아과 ④ 영상의학과

62. 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있다. ② 30병상 이상이 있어야 한다.
- ③ 치과병원도 입원시설의 제한이 있다. ④ 최소한의 진료과목이 있다.

해설

제3조의2(병원 등)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63.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 ②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지정된 8개 진료과목 외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야 한다.
- ④ 종합병원은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정답

58. ④ 59. ② 60. ③ 61. ① 62. ③ 63. ④

64. 의료법상 종합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③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 ④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6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 ② 의료기관에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 ③ 병원에는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 ④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중 환자의更生·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1.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2.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3.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4.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5.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更生·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66. 종합병원이 보유해야 할 의사의 법정정원 기준은?

- 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1인(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 ②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인(외래환자 5명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 ③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명당 1인(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 ④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5명당 1인(외래환자 5명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해설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의료법 38조 관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1인(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

67.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권자와 평가주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 - 1년
- ② 시·도지사 - 1년
- ③ 시장·군수 - 3년
- ④ 보건복지부장관 - 3년

68.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3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 ②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상급종합병원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있다.
- ④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9.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를 하기 위한 평가는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가?

- ① 1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해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70.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 | | | | |
|-----------|---------|---------|--------------|
| 가. 종합병원 | 나. 한방병원 | 다. 요양병원 | 라. 병원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라 |

해설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71.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전공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간에서 수련시킬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은 병원협회장이 정함
- ③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
- ④ 전문의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치과 등임

해설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제14조, 제3조

72. 의료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의사는 특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등에 있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③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사체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는 자신이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해설 의료인중 간호사는 자신이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73.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속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신질환자
- ② 과태료 처분자 및 업무정지자
- ③ 마약, 대마중독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해설

제8조(결격사유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법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禁治産者): 심신상실(판단능력이 없음),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 재산낭비

74.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자는?

- 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②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자
- ③ 한정치산자
- ④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

75.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정신질환자
- ② 척추장애자
- ③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④ 마약 · 대마 ·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해설

· 금치산자(禁治産者):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심신박약, 재산낭비

76. 의료인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자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라. 국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마. 의료인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소지자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가, 나, 라
- ④ 다, 라, 마

해설

제10조(응시자격제한 등) 1) 의료법 제8조(의료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77.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협회회장에게
- ②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차관에게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해설

[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 ② 국가시험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영리법인에 국가시험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시험장소는 지역별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해야한다.
- ④ 필요한 사항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이 있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79.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병원 개설 - 시장·도지사의 허가
- ② 의원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③ 의료법인 설립허가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설 법 제48조제1항(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8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의 조치는?

- 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 ② 시·도지사에게 허가
-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
- ④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설 제37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아닌 것은?

- ① 진단용 X-선 장치
- ② 진단용 방사선 현상기
- ③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 ④ 유방촬영용 장치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가. 진단용 엑스선 장치 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마. 유방촬영용 장치

82.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가?

- ①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 30일
- ② 시·도지사 - 30일
- ③ 보건복지부장관 - 30일
- ④ 시장·군수·구청장 - 30일

해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3.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 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계획·평가 및 점검
- ② 진단영상정보관련설비의 안전관리
- ③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 실시
- ④ 방사선분야 관련업체의 지시교육 이행여부 확인

해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시행 2010.1.22>

1.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업무의 계획·평가 및 점검
2.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로직
4. 진단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
8.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한다.
- ③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설자나 관리자는 안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85.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몇 년마다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제4조(검사 및 측정)제2항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6.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권자는?

- ① 방사선사협회장 ② 관할 보건소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질병관리본부장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7., 2012.11.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2013.3.23.>

8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 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나.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다.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
- 라.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 조치

- ① 가 + 나 ② 나 + 다 ③ 가 + 나 + 다 ④ 가 + 나 + 다 + 라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제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2.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7. 제3조제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방사선 방어시설(이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하여 안전한 관리, 직원보호, 진료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진단용 엑스선 장치 및 발생기, 초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다.
- ③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은 방사선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해야 한다.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시·군·구에 있는 분원(分院) 또는 분소(分所)에 설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89. 의료인은 언제부터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 ① 28주 이후 ② 30주 이전 ③ 32주 이전 ④ 32주 이후

해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무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0.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금지
- ②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
- ③ 진료기록부의 작성
- ④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전 교부

해설 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91.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환자 치료경위서의 열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 ③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된다.
- ④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발표하지 못한다.

해설 ① 의료법 제15조제1항, ② 의료법 제21조제4항, ③ 의료법 제20조제1항, ④ 의료법 제19조

92. 진료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 ① 해당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시설이나 진료과목이 없어 그 환자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의원에서 의사가 건강상 이유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진을 게시한 경우
- ③ 의원에서 전산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환자에 대하여 마취전문의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환자가 의식이 또렷하고 심신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경우

해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 ① 의사가 부재중일때
- ② 의사가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할 때
- ③ 일기가 나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 사실상 왕진이 불가능 할 때
- ④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⑤ 환자의 과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⑥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93. 진료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비가 없다고 하여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진료시간 이외의 경우라도 구급환자의 진료는 거부할 수 없다.
- ③ 특정한 직장인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구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일기의 불량·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 할지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

- ① 의사가 부재중일때
- ② 의사가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할 때
- ③ 일기가 나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라 사실상 왕진이 불가능 할 때
- ④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⑤ 환자의 과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⑥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나 투약을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94.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
- ② 뇌사상태는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 ③ 식물인간상태는 몸 전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
- ④ 뇌사자의 장기는 이식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

구분	뇌사 상태	식물인간 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함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	자발적 호흡 불가능	자발적 호흡 가능
회복가능성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수개월·수년 동안 생존하며 회복가능성도 있음
장기기증 가능 여부	장기기증이 가능함	장기기증 불가능

(출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생명나눔안내 - 장기기증과 이식 - 뇌사기증)

95. 환자의 기록사본 또는 열람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환자의 직계비속이 요구하는 경우 ②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③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④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상 요구하는 경우

해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96. 의료인의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②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③ 영업세 면제 ④ 기구 등의 우선공급

해설

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 ①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97. 의료인의 의무에 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 ③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해서는 안 된다.
- ④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을 보내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 같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에 대한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 기록,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환자 이송과 함께 초진기록(초진기록)을 보내야 한다.

98.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업을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로 요청하는 경우
- ③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④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병원장의 지시와는 무관하다.

99. 의료인의 의무 중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 ① 기록열람
- ② 진료기록부의 기재서명
- ③ 요양방법지도
- ④ 변사체신고

해설

제88조(벌칙), 제90조(벌칙): 참조

- 기록열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진료기록부의 기재 서명: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사체 신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 외국의 의료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범위가 아닌 것은?

- ①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 업무
- ② 전시·사변 시 국가의 요청에 의해 행하는 의료행위
- ③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④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의 목적사업을 위한 업무

해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시행규칙 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원의 의료봉사 업무

101.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찰하지 않고 진 단서를 교부할 수 있나?

- ① 24시간 ② 30시간 ③ 36시간 ④ 48시간

해설 제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검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02.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앙회의 보수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연 8시간 이상이다.
- ②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200 병상이상을 가진 수련병원에서만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보수교육 증빙서류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해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103.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은?

- ①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②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
③ 매년 2회 이상, 4시간 이상 ④ 매년 2회 이상, 8시간 이상

해설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04. 보수교육 관계서류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보존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을 보존해야 한다.
③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④ 보수교육 관계서류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해설 시행규칙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5. 의료인 단체의 전국적 조직의 모임은 의료법상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협회 ② 중앙회 ③ 전국회 ④ 본회

해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06.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의료인
②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해설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7. 의료인의 중앙회 외국지부는 정관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몇 주 이내에 설치해야 하나?

- ① 3주 이내 ② 5주 이내 ③ 8주 이내 ④ 10주 이내

|해설

시행령 제15조(중앙회의 지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 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정법인(法定法人) - 당연 설립 cf. 임의법인(任意法人): 의료기사 등

108.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9. 의료법에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① 신용협동조합 ② 의료생활협동조합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설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은 의료와 건강에 관련한 문제를 조합원들이 개선하고 해결해나가고자 만들어진다.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의료인과 함께 협동하여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이용한다. 또한 치료뿐 아니라 보건과 예방을 중시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켜나갈수 있는 여러가지 건강강화 체조교실 등산모임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 병원 개설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제33조(개설): 참조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111.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료법인이 의원을 개원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②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의사가 의원을 개원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④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1개만은 개업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②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107. ④ 108. ① 109. ① 110. ④ 111. ④

11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 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 다.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다, 라

해설

시행규칙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③ 시·도사는 제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של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5.5.29>

113.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아니하는 조건은?

- 가. 부령에 의한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
- 나. 면허의 조건에서 특정지역에 의료기관 개설
- 다. 개설허가 취소처분 받은 자가 6월 이내에 의료기관 개설
- 라. 의료기관별 의료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마. 부속병원이 있는 곳에 의료기관을 개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라 ④ 다, 라, 마

해설

제33조(개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삭 제(개정 2000.1.12) (부령에 의한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였음)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1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②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 ③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이외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④ 입원실이 아닌 장소라 하더라도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 등은 입원 할 것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할 것
3.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4. 정신병환자는 정신병 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5.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그 밖의 환자를 같은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6.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옷·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5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10.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

115.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① 의료업 정지
- ② 개설허가 취소
- ③ 의료기관 폐쇄
- ④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감사의뢰

해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4.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한 때
6. 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16.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은?

- ①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한 때
- ②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기피, 방해, 지도, 시정명령위반
- ③ 개설신고, 허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지 않을 때
- ④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해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117.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②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해설 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118.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 ① 시·도지사
-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해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19.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 ① 적출물소각시설
- ② 소독시설
- ③ 세탁처리시설
- ④ 급식시설

해설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0.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은?

- ① 입원실 ② 폐기물 위탁계약 ③ 임상검사실 ④ 물리치료실

해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중 관계가 먼 것은?

- ① 화재, 기타 긴급대책의 필요시설 ② 방충, 방서, 세균오염방지시설
 ③ 전기, 가스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④ 전문과목의 표시 시설

해설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 가스등의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그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122. 의무기록사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은?

- ① 치과병원 ② 한방병원 ③ 병원 ④ 종합병원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3.19>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있어서는 1인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강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9> [시행일: 2011.1.30.] 제38조제2항제1호

123.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정신질환자 ② 노인성 치매환자
 ③ 만성질환자 ④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해설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정신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을 말한다)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9.>

124.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옳은 것은?

가. 만성 질환자 나. 급성 질환자 다. 노인성 치매환자 라. 정신질환자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125. 요양병원에서는 요양환자를 최소 몇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① 20명 ② 30명 ③ 40명 ④ 50명

해설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 제3조의2(병원등): 참조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26. 요양병원의 의사인력기준은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명이다. () 안에 옳은 것은?

① 30 ② 40 ③ 50 ④ 60

해설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에 대하여 의사 1인,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인,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127. 요양병원 인력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일 입원환자 수 40명당 1명의 의사 확보
- ② 1일 입원환자 수 6명당 1명의 간호사 확보
- ③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범위 내에서 허용
- ④ 중환자실 간호사는 1일 입원환자 수 5명당 1명 확보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요양병원 1.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2.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128.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조건이 되지 않는 것은?

-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 ② 설립 후 2년 경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을 때
-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이 취소된 때
- ④ 의료법인이 과대 광고할 때

해설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29.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 | | |
|--------------------|--------------------|
| 가.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 다. 휴게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 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4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30.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내용은?

- 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
- ②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광고
- ④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해설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2017.2.28.>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10.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31.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 ① 특정 의료인의 기능 ② 진료 방법 ③ 조산 방법 ④ 진료 과목

해설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참조

132.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는?

- ① 다른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 ③ 신문을 이용하여 기사형태로 표현되는 내용
- ④ 다른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내용

133.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 ②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④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해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134.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가 허용되는 범위는?

- ① 학문적, 과학적으로 인정 여부를 심사 중인 신기술
- ② 특정질환의 치유 경험담이나 수술 전, 수술 후 사진
- ③ 전문의의 세부 진료과목
- ④ 전문병원의 진료 방법 비교

해설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참조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사진, 도안들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행할 수 있다.

135. 의료법에 정한 의료광고 금지 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광고는 방송법에 정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신문이나 잡지를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허용된다.

136. 의료광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인의 진료방법 또는 치료방법
-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③ 예약진료의 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 ④ 진료담당의사의 성명, 면허의 종류

해설

-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7.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것은?

- ① 일간신문
- ② 주간지
- ③ 전화번호부
- ④ TV, 라디오

해설

-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 심의를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38.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 | | | |
|----------|----------|--------|------------|
| 가. 정기간행물 | 나. 인터넷신문 | 다. 현수막 | 라. 벽보 및 전단 |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139.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과잉진료행위 ②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
 ③ 진료거부행위 ④ 영리목적의 약국개설자와의 담합행위

해설 시행령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투약(投藥)·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② 특정한 행위가 제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140. 의료인의 품위손상 내용은?

- | | |
|-------------------------|----------------|
| 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나. 과다 진료비 요구행위 |
| 다. 환자 유인행위 | 라. 과잉 진료행위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141.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정지 시
 ③ 면허의 조건 불이행 시
 ④ 당직의료인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해설 제65조(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2008.2.29, 2009.1.30, 2010.1.18>

1.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9.12.31> (삭제내용: 제20조 규정에 위반)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42. 의료인의 면허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 ②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④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다가 5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43.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②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경우
- ④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4. 의료인의 면허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②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③ 진단서 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할 때
- ④ 의료기사에게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해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45.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가 잘못에 대해 처분하기 전 진술의 기회(청문)를 주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의료법인의 허가 취소
- ② 시정명령
- ③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
- ④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해설

제8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의 사용금지명령
-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명령
-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정답

142. ④ 143. ① 144. ② 145. ④

146.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③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④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147. 불법적인 의료면허증의 대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면허증 대여에 따른 벌칙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②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8.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의료법 제88조(벌칙)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제2항(기록열람), 제22조제3항(진료기록부의 거짓작성 등), 제27조제3항·제4항(무면허의료행위),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의 유치), 제33조제4항(개설), 제35조제1항(의료기관개설 특례), 제59조제3항(지도와 명령), 제64조제2항(개설허가 취소),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49. 의료인이 태아 성감별행위를 하였을 때 벌칙은?

- ①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 ②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법 제88조의3(벌칙)

150.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 ① 정보누설금지의무 위반
- ②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위반
- ③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무 위반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

해설 • 정보누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양방법의 지도의무 위반-처벌규정 없음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무 위반-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1. 의료법 정지처분에 갈음할 수 있는 조치는?

- ① 과태료 처분 ② 과징금 처분 ③ 허가취소 처분 ④ 시정명령 처분

해설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52. 진단서 및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 | | | | |
|-----------|---------|--------|--------------|
| 가. 의사 | 나. 치과의사 | 다. 한의사 | 라. 조산사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라 |

해설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153. 사체 검안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 | | | | |
|-------|---------|-----------|--------|
| 가. 의사 | 나. 치과의사 | 다. 한의사 | 라. 조산사 |
| ① 가 | ② 가, 나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

154. 진단서 교부 및 발부의 주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② 검안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③ 증명서 또는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④ 사산 증명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해설

제17조 (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경찰청장(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정답

151. ② 152. ① 153. ③ 154. ④

155. 환자가 요구하면 의사가 처방전에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 ①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③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④ 의약품 단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156.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면허증을 대여한 자
②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등을 파괴, 절거 등의 진료방해
③ 무면허의 의료행위
④ 태아 성감별 행위

해설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1.30)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 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②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7. 종합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이다.
②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출 것
③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④ 진료과목을 최소한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및 치과를 설치해야 된다.

해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158. 변사체로 의심이 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사체의 소재지 경찰서장 ② 사체의 소재지 보건소장
③ 사체의 본적지 경찰서장 ④ 사체의 본적지 보건소장

해설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9. 변사체의 검안과 보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의사가 검안을 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조산사가 검안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치과 의사가 검안을 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의사가 검안을 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0.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시장, 군수, 구청장 ② 시·도지사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대한병원협회장

해설 의료법 제33조(개설)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161.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여야 하는 곳은?

- ① 보건소 ② 경찰서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62. 의료인이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매체는?

- ① 전문서적 ② 인터넷신문 ③ 현수막 ④ 전단지

해설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0.3.1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사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사회: 치과 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의사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63.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방전 - 2년
- ② 수술기록 - 3년
- ③ 진단서 - 5년
- ④ 환자명부 - 10년

164.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의 보존기간은?

- ① 3년
- ② 5년
- ③ 10년
- ④ 영구 보존

해설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환자의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진단서등 부분(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65.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이 옳은 것은?

- ①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 10년
- ②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 5년
- ③ 방사선사진, 처방전 - 3년
- ④ 진단서부분, 환자명부 - 1년

166.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5년이 아닌 것은?

- ① 환자명부
- ② 검사소견 기록
- ③ 진단서 등의 부분
- ④ 조산기록부

167.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것은?

- ① 비밀누설의 금지위무 위반
- ②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무 위반
- ③ 변사체의 신고의무 위반
- ④ 진단서 교부의무 위반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8조)

1. 의료·조산·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발표한 자(단, 친고죄이므로 고소 시 처벌)
2.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한 의료인
3. 2)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행위를 도와 준 의료인
4. 임부의 진찰·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
5.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에 응한 경우(친고죄 ⇒ 고소 시 처벌)
6.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사주하는 경우
7.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을 개설한 자
8. 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의 자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부설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관할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설할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중인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때
10.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의료인·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의료지도원 및 공무원(친고죄⇒ 고소 시 처벌)

168.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범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은?

- 가. 면허증을 대여한 자
- 나. 비밀을 누설한 자
- 다. 환자의 기록열람 등 내용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자
- 라. 태아의 성감별을 한 자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해설 제20조(태아 성 감별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 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6호에 의하여 2008.7.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169. 의료법에 의거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 ② 급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 ③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④ 사업장 내 화재로 인한 사망

해설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70. 의료기관시설 등의 공동이용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시에 시설·장비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
- ②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 ④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시에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

해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171. 병원감염의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모든 의료기관 ② 200병상 이상의 병원
- ③ 병원 이상 의료기관 ④ 의원 이상 의료기관

해설 제47조(병원감염 예방)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및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72. 병원수술실의 콘센트 높이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① 0.5 m ② 1 m ③ 2 m ④ 3 m

|해설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0.3.19>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 피복, 봉대재료, 기계기구, 의류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m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3. 의료기관의 안전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급 구조차의 주차에 관한 시설 ②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③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④ 전기·가스등의 유해 방지에 관한 시설

|해설

시행규칙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기타 긴급대책에 필요한 시설
2. 방충·방서·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등의 유해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유해방지에 관한 시설
6. 기타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상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본조신설 1982.12.31.]

174.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내용은?

가. 환자 및 의료인의 성명	나.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용량
다. 교부 연월일 및 사용기간, 질병분류기호	라. 조제 시 참고사항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7.11, 2005.8.12>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 시 참고사항
-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제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8.12> [전문개정 2000.6.13.]

175. 개방병원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개원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현행 의료법상 인정될 수 없다.
- ③ 보건소의 장비도 개원의에게 개방할 수 있다.
- ④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된다.

| 해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참조

개방병원제도란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의료장비와 인원이 부족한 개원의 의사들에게 개방하고, 개원의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와 함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176.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회수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

- ①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 ③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 ④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 해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177.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로서 옳은 것은?

- 가.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을 할 때
- 나.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허가가 취소될 때
- 다. 시장 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할 때

- ① 설립허가의 취소 ② 개설허가의 취소 ③ 의료기관의 폐쇄 ④ 과징금 처분

| 해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78. 원격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격医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② 원격医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외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외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79. 원격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원격医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원격医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④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외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외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医료를 할 수 있다.
 ② 원격医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医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외사의 원격医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외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외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외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80.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 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위
- ② 외국인 환자의 유치와 진료
- ③ 의사의 판단에 의해 가정방문을 하여 진료하는 행위
- ④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 하는 행위

181.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 ① 모든 의료기관
- ②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 ③ 병원 이상 의료기관
- ④ 의원 이상 의료기관

해설

시행규칙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상이 2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82.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한 병원 방문객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자의 침대에 앉거나 눕지 않는다.
- ②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를 금지한다.
- ③ 환자나 보호자 및 다른 환자와 음식물을 함께 먹지 않는다.
- ④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카테터, 분비물 등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

178. ④ 179. ① 180. ③ 181. ② 182. ②

193. 의료기관인증의 유효기간은?

-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5년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94.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환자의 권리와 안전 ②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 활동
 ③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④ 의료기관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적정성

195. 의료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생증명서를 교부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치과의사이다.
 ③ 의료인이 약국개설자와 담합하는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다.
 ④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 의료법 제33조제4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17조제2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제16조제1항: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196.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할 때,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르게 조합된 것은?

가. 보건복지부장관	나. 시·도지사
다. 시장·군수·구청장	라. 보건소장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나, 다

197.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
- ②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함
- ③ 누구든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에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
- ④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음

해설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198. 의료법상 처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 ①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제19조
- ② 요양방법의 지도 의무 위반
- ③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 위반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탐지

해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중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의,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처벌규정없음

199. 다음 내용이 관련법규에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신고한 자가 세탁물의 보관·운반을 할 수 있다.
-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월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정한다.
-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200.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사교육-의료관련 조사-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장례식장-의료정보시스템 사업-음식점-이미용업-주차장
- ② 환자건강교육사업-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구내매점의 운영-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사업의 운영-가정방문 의료사업
- ③ 임상병리검사 위탁사업-건강진단 사업-의료기기 판매업-의료정보시스템 사업-장례식장 운영-방문간호사업
- ④ 의사교육-의료관련 조사-건강진단 사업-의료기관 임대업-의약품 판매업-음식점-이미용업-주차장

해설 부대사업(제49조)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 의료기관 인증등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증
- ② 조건부 인증
- ③ 불인증
- ④ 조건부 불인증

202.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대사업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 ②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다.
- ④ 부대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 ②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3.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에게 의뢰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가정간호 전문간호사는 검체의 채취 및 운반이나 간호활동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 ③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 전문간호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가정간호기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가정간호) ①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호, 2.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 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 ③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 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04. 의료유사업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골사와 침사 ② 구사와 침사 ③ 접골사와 구사 ④ 안마사와 안경사

해설

의료법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205.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알려야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신의료기술평가위원장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해설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206.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군 감염병이란 마시는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감염병이다.
- ② 제2군 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다.
- ③ 제3군 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 ④ 제4군 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목적의 감염병을 말한다.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211. 제1군감염병은?

- 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② 두창, 콜레라 ③ 아토펙, 백일해 ④ 세균성이질, 성병

|해설

감염병의 예방법 제2조(정의)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212. 식품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 ① 수두 ② 인플루엔자 ③ 유행성이하선염 ④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13.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으로 정한 제2군 감염병은?

- ① 일본뇌염 ② 인플루엔자 ③ 장티푸스 ④ 결핵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14. 제2군감염병이 아닌 것은?

- ① 파상풍 ② 발진티푸스 ③ 일본뇌염 ④ 백일해

|해설

감염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타. 폐렴구균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24.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곳은?

- ① 국립검역소 ② 질병관리본부 ③ 의과대학 ④ 보건진료소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기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225. 감염병 기본 계획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나.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라.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26.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 ① 20명 이내 - 1년 ② 20명 이내 - 2년
 ③ 30명 이내 - 3년 ④ 30명 이내 - 3년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224. ④ 225. ① 226. ②

230. 감염병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장의 신고로 옳은 것은?

- ① 1군, 2군, 3군 - 3일 이내 ② 1군, 3군 - 3일 이내
 ③ 3군, 4군 - 7일 이내 ④ 1군, 2군, 3군, 4군 - 지체없이

231. 감염병환자의 발생시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 | | | | |
|---------|--------|--------|-----------|
| 가. 장티푸스 | 나. 파상풍 | 다. 뎅기열 | 라. 렙토스피라증 |
|---------|--------|--------|-----------|
-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② 제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6조제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32. 인수공통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내용은?

- | | |
|----------------|----------------|
| 가. 탄저 | 나. 돼지인플루엔자(H5) |
| 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라. 광견병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32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읍장 또는 면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감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② 제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33. 신고의무자의 신고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면 ② 컴퓨터통신 ③ 전화 ④ 수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234.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 ① 관할 보건소장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질병관리본부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235.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가.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나. 지정감염병
다. 제5군감염병	라. A형간염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가. C형간염, 나. 수족구병, 다. 임질, 라. 클라미디아, 마. 연성하감, 바. 성기단순포진, 사. 침균군덜름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자.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파. 카바페뎀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하. 장관감염증, 거. 급성호흡기감염증, 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3. 제5군감염병(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236.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 ① 인플루엔자 ② 제1군 감염병 ③ 지정 감염병 ④ 제5군 감염병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표본대상이 되는 감염병)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5군감염병

23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인은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③ 가축전염병 중 탄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돼지 인플루엔자 등을 신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일반가정 세대주는 홍역, 결핵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읍장 또는 면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243. 감염병 예방접종의 공고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 |
|-------------------|-------------|
| 가. 예방접종 일시 및 장소 | 나. 예방접종의 종류 |
| 다.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 | 라. 예방접종 방법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44.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명할 수 있는 자는?

- ① 보건소장 ② 질병관리본부장 ③ 시·도지사 ④ 시·군·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45.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는 곳은?

- ① 보건소 ② 질병관리본부 ③ 시·도 ④ 시·군·구청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246.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받는 자는?

- | |
|-------------------------------|
| 가. 의사 |
| 나.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
| 다.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 라. 검역 전문가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47.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시·도지사 ② 시·군·구청장 ③ 보건소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48. 예방접종약을 계획 생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②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③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④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249.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① 시·도지사 ② 시·군·구청장
 ③ 건강보험공단이사장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50. 예방접종으로 피해로 인한 국가보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②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과 정액 간병비
 ③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와 일시보상금
 ④ 사망자에 대하여는 장제비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1.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가?

- ① 30일 ② 60일 ③ 90일 ④ 120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252. 예방접종으로 피해로 보상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③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④ 장제비: 50만원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253.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장애·사망 시 보상의 주체는?

- ① 시·도지사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보건소 ④ 국가

254.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는?

-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본인 ④ 자식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령 제30조

255.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누구에게 신청하는가?

- ① 시·군·구청장 ② 시·도지사 ③ 질병관리본부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령 제31조

1. 감염병관리시설: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갖춘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 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춘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260. 감염병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환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및 유급휴가 내에서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 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9.>

261.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제1군감염병
 나.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다. 생물테러감염병
 라.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262. 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와 보호자에게 입원할 것을 알려야 하는 통지자는?

- ① 질병관리본부장 ② 질병을 확인한 병원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④ 역학 조사 반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6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분리된 고위험병원체 이동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 ① 국립검역소장 ② 시·도지사 ③ 질병관리본부장 ④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64.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는?

- ① 제1군감염병환자 ② 제2군감염병환자 ③ 제3군감염병환자 ④ 제4군감염병환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265. 감염병으로 일시적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 | | | | |
|-----------|-----------|--------|-----------|
| 가. 완구점 | 나. 집단 급식소 | 다. 문구점 | 라. 식품 접객업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라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266.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명령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과 동거인
② 감염병환자 등의 친척
③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자
④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사람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267. 소독을 해야 할 시설 규모로 옳은 것은?

- 가. 관광숙박업소 나. 영유아 보육시설 다. 학교 라. 대형마트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규칙 제11조
【소독 의무】

-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268.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 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다.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
- 라.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간강쫂단 사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69.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옳은 것은?

- 가.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단
 나.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
 라.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척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270. 소독을 해야 할 시설의 규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② 객실수 20실 이하의 숙박업소
- ③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④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고속버스 대합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규칙 제11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정답

269. ④ 270. ②

271.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 ① 국립보건원장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보건소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72. 소독업자가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 ① 국립보건원장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보건소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3.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시행규칙 제40조

-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7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독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약물소독 ② 증기소독 ③ 전기소독 ④ 끓는 물 소독

해설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275.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연간 감염예방교육 시간은?

- ① 4시간 이상 ② 6시간 이상 ③ 8시간 이상 ④ 10시간 이상

해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76. 소독업의 영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라.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5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77. 소독업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 소독업무 종사자는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③ 종사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시행규칙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78. 감염병 환자 관리 및 강제처분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 | | | | |
|-------------|--------|--------|--------------|
| 가. 진찰비, 치료료 | 나. 입원료 | 다. 수술비 | 라. 검사료 |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라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279.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 ②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시행령 제28조
【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0. 소독업 변경신고를 아니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시·군·구청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① 과태료 처분 ② 청문 ③ 양벌규정 ④ 위임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 ① 비밀을 누설한 자
② 격리수용소를 거절한 자
③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④ 신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벌칙>

제74조(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나.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다.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라.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5.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28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은?

- ① 과태료 처분 ② 청문 ③ 위임 ④ 양벌 규정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80. ② 281. ④ 282. ① 283. ④

284.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의 벌칙은?

- ①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5. 세균성 이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강제처분에 불복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칙은?

- ① 2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 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중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 ②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③ 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 ④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2.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4.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
5.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7.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29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87. 과태료 규정과 처분권자는?

- ①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② 대통령령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③ 국무총리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④ 국무총리령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2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 ③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②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 마약, 세탁물, 기타

289.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보고를 누가 하게 하는가?

- ① 보건소장 ② 시장·군수·구청장 ③ 시·도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적출물 등의 처리

- ①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체아, 장기, 기타의 물체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 ② 적출물 및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매물 2m 이상, 소각 2일 이내) 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290. 세정하거나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 ① 피,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 ②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 ③ 신생아복과 수술복
- ④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 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나. 의류 :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 다. 리넨류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 라. 기타 : 커튼, 식우개류, 수거자루 등

291. 의료기관 세탁물로서 재사용 세탁할 수 없는 것은?

- ① 이불 및 시트 ② 봉대 및 거즈 ③ 환자복 및 수술복 ④ 린넨류

해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 이불·담요·시트·베개·베개포 등

나. 의류: 환자복·신생아복·수술복·가운 등

다. 린넨류: 수술포·기계포·마스크·모자·수건·기저귀·기타 린넨류

라. 기타: 커튼·씩우개류·수거자루 등

2. "오염 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동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기타 전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 세탁물"이라 함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4. "일반 세탁물"이라 함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92.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가 사용한 것으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이다.
 ② 오염 세탁물이란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이다.
 ③ 일반 세탁물이란 의료기관 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④ 기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 세탁물과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293. 병원세탁물의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의 자체처리 ②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③ 재위탁처리 ④ 증기소독 후 세탁처리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관리 규칙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9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자(세탁물처리업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수 없다.
 ③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291. ② 292. ④ 293. ③ 294. ②

295.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규정된 세탁물 처리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 ② 시설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한다.
- ③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오염세탁물은 증기소독, 끓는 물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처리한다.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3.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오염세탁물을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296.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세탁물의 관리책임자 지정
- ② 위탁처리 세탁물은 수집차루 등 밀폐용기에 넣어 관리
- ③ 세탁물의 분류기준과 관리방법을 기록·비치
- ④ 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세탁물을 처리 위탁 금지

해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해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세탁물처리시설에서의 자체처리
2.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297. 의료기관 세탁물 보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기관은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에 대하여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의료기관에서 세탁물을 자체 처리 할 경우에는 세탁실 외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해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298. 의료기관이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 ①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 ②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 ③ 바이러스성 출혈열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 ④ 수술복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

1.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사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 | | |
|---------------|----------------|
| 가. 응급환자의 구조행위 | 나. 응급환자의 이송 |
| 다. 응급환자의 진료 | 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00.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증 정지나 취소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급환자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 ②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 ③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 ④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자격 정지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처분의 사유

- 1) a)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 b)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진료 등
- c) 대량 환자발생에 따른 명령
- d)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 e) 출동 및 처치의 기록과 제출 등의 위반
- 2)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 3)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 4) 의사의 지시 없이 응급처치를 한 때
- 5)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6)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3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
- ②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 ③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 ④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지원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지원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지원

302. 내용이 법 규정과 다른 것은?

- ①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한다.
- ②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③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④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응급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라 한다.
- ② 응급의료영역에는 응급환자 진료, 이송, 구조행위,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다.
- ③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송수단 제공과 알선, 진료의뢰서를 송부해야 한다.
- ④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확보율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이다.

|해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 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医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医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2) 의료기관의 장은 제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4)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제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항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304.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을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 ① 대한적십자사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건강보험공단 ④ 지방자치단체

|해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지급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한다.

30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응급医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될 수 없는 분야는?

- ① 소아센터 ② 화상센터 ③ 대사성질환센터 ④ 독극물센터

|해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医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1. 화상센터 2. 심혈관센터 3. 독극물센터 4. 소아센터

306.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한국소비자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 ③ 한국의료소비자시민연대 ④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답

303. ③ 304. ② 305. ③ 306. ②

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용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그러하지 아니함
- ②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 ③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④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308. 가정간호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로부터 90일 까지
- ②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
- ③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3명이상 둔다.
- ④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함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